

# 2025 B-Wave TIPS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공고

부산연합기술지주에서는 동남권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케일업을 위하여 “B-Wave TIPS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4년 12월 24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대표이사

## 1 개요

### □ 사업목적

- 민간주도의 R&D기반(TIPS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액셀러레이팅 과정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스케일업 지원

### □ 모집규모 및 대상

- 모집규모 : 총 6개사 \*모집규모는 사업 운영 및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대)

### □ 모집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1월 22일 17시까지

### □ 제출서류

- ① 별첨 1 : 2025 B-Wave TIPS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② 별첨 2 : 2025 B-Wave TIPS 사업계획서
- ③ 신청기업 IR자료(자율양식)
- ④ 별첨 3 :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출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제출처 : 구글폼을 통한 신청 접수

(<https://forms.gle/MXUXH9Y7uekh5imy7>)

## □ 지원사항 : 2025년 TIPS 추천 및 투자

- ❖ 참여기업 대상 스타트업-투자 심사역 1:1 멘토링 및 기업진단 지원
- ❖ 부산연합기술지주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투자유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
  - B-Startup PIE 배치 프로그램 접수 관련 서류 면제
  - PIE Meet up Day 참여지원(투자사 프라이빗 네트워킹)
  - B-Startup PIE 배치 프로그램(상시) 데모데이 참여 지원
- ❖ 참여기업 대상 부산연합기술지주-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유 펀드 직접투자 검토
-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B.Cube 입주기업 신청 시 가점  
(3월 중 입주기업 공고 예정)

## □ 추진일정

진행절차	일정	세부내용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4.12.24.~25.01.22. 17시까지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적격검토	25.01.22.~01.23.	미비서류 및 기준 자격 적격여부 검토
▼		
서류평가	25.01.27.~01.30.	적격여부 확인 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서류심사
▼		
서류평가 결과발표	25.01.31.	서류평가 선정업체 공지 및 발표평가 안내
▼		
발표평가	25.02.03.~02.06.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
▼		
최종결과 발표	25.02.07.	최종 선정기업 안내 및 게시
▼		
사후관리	25.02.10.~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및 지원

##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 추진절차

평가단계	수행내용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요건검토
1단계 서류평가	· 제출된 신청서 내용 기반으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 등 평가
2단계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 스타트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 · 대상자별 선정 및 이메일, 유선 통지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대)
-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7년 12월 24일 이후
  - \* (별첨4)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납부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별첨4) 및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평가기준

구분	주요내용	
요건검토	■ 구비서류 요건 검토	
서류/발표 평가	문제인식 (20점)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 창업아이템 목적 및 필요성
	실현 가능성 (30점)	·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 모델의 다각한 분석을 통한 실현가능성 등의 사업화 전략 · 창업 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등
	성장전략 (30점)	· 투자자금 확보 전략, 희망 자금규모 및 활용방안 · 시장확장 전략 및 성과창출 방안 등
	팀구성 (20점)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평가방법

- (적격검토) 적격여부 서류검토(서류누락 및 허위사실 검증)
- (서류평가)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
  - 공정성을 위해 신청업체의 서류 평가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 70점 이상 득점기업 대상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 후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
  - 평가시 동점자의 경우, 합계점수를 비교하여 합격자를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대면발표 진행 및 관련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면평가) 평가 후 최종 6개사 선정(예비 2개사)
  - 서류평가와 같은 절차로 평가 진행, 발표평가 결과 최고득점 업체의 선정업체 적격여부 검토(자료보완 또는 수행가능성 검토 후 선정)
  - **최종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진행
  - 예비선정 업체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아니함.
    - ※최고득점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포기하는 경우, 예비업체 대상 적격심사 진행
    - ※해당 프로그램 적격팀 없을 시 미선정 가능

### 3 신청 시 유의사항

#### □ 유의사항

접수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16:00에 접수 요망

- 신청 업체 및 단체당 1건의 지원신청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재단은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서 작성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 필수 제출서류 미비, 기간 미준수, 양식 미준수 및 신청자격 미달 시 행정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운영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 이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교부된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

### 5 신청문의

#### □ 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엑셀러레이팅팀	모선영 팀장	051-717-2697	symo@buholdings.co.kr
	김정현 대리	051-717-2467	jhyeon@buholdings.co.kr

**별첨 1**

**2025 B-Wave TIPS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

**2025 B-Wave TIPS 신청서**

1-1. 대표자(신청인) 개요 \*신청인과 대표자(창업자)는 동일해야 함

대표자 (신청인) 정보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최종 학력	학교명			학교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수료 <input type="checkbox"/> 박사
		학과명			학과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주요 경력	○ ○ ○					

1-2. 실무책임자 개요

실무 책임자 정보	성명		직 위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2. 회사(팀)개요

회사명				설립일자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연구소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소재지						
직원(팀원) 수	2022년	명	2023년	명	2024년	명
자본금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매출액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3. 사업화

아이템명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기계·소재 <input type="checkbox"/> 전기·전자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input type="checkbox"/> 농식품 <input type="checkbox"/> 바이오·의료·생명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자원 <input type="checkbox"/> 소셜·로컬 <input type="checkbox"/> 블록체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b>작성</b> )					
투자 희망단계	<input type="checkbox"/> SEED <input type="checkbox"/> 프리A <input type="checkbox"/> 시리즈A <input type="checkbox"/> 시리즈B <input type="checkbox"/> 시리즈C					

4.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권리구분/등록여부 (국내외특허, 실용실안 등)	등록(출원)명칭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인
	국내특허/출원중			
	국내특허/등록완료			

5. 창업기업 지원 정부사업 참여현황

창업지원 정부사업 과거 수혜현황 (2022.1.1. ~2024.12.31 )	수행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6. IR(investor relations) 자료 보유 여부

- 투자유치용 회사/BM/아이템 발표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IR 자료 보유 기업일 경우 서류 제출시 첨부)

7. 투자유치

국내외 자본유치 경험	1. 국내외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해외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해외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해외
	2. 유치일자 :			
	3. 유치금액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4. 유치경로 :	VC/엔젤투자/엑셀러레이터	VC/엔젤투자/엑셀러레이터	VC/엔젤투자/엑셀러레이터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붙임서류와 같이 『2025 B-Wave TIPS』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부산연합기술지주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2025 B-Wave TIPS프로그램 참가신청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①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 ② 신청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을 조회하여 프로그램 운영, 통계자료 활용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정보 입수와 확인에 사용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5년간 보관됨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프로그램 참여 불가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한 액셀러레이터 기업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프로그램 참여, 연계 사업안내,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평가, 프로그램 진행 관련 안내(계약, 제출, 점검 등) 등 업무 추진 불가능

※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귀 기관이 지정한 제3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동 의 자 :

(서명)

부산연합기술지주

2025 B-Wave TIPS 지원 사업계획서

★ 본문은 반드시 **맑은고딕 11p, 최대 10page 이내**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의 목차를 준수하되 일부 세부 항목과 내용을 가감하여 작성 가능 (이 안내글도 삭제 후 제출)

1. 창업아이템 개요

아이템명		
창업아이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li> </ul>	
경쟁제품 (서비스)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경쟁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자사제품의 차별성, 비교우위성 기재</li> </ul>	
국내/외 목표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목표시장 및 특징, 이와 연계된 마케팅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li> </ul>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li> </ul>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 2. 창업자의 전문성

### 2-1. 창업 배경 및 필요성

- 
- 

※ 창업배경 :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필요성 : 해당 아이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필요성 기재

### 2-2. 보유 역량

- 대표자 역량 및 주요 경력
- 팀원 현황 및 역량(대표자 제외)

현재 팀원 수	<i>000 명</i> <i>(팀원이 없을 경우 0명으로 기재하고 아래 팀원 구성 계획을 작성)</i>		
순번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1	<i>000</i>	<i>S/W 개발</i>	<i>컴퓨터공학과 교수</i>
2		<i>마케팅</i>	<i>00기업 마케팅 경력 8년</i>
3		<i>R&amp;D</i>	<i>00연구원 경력 10년</i>

※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에 대한 간략 기재  
 ※ 팀원이 없는 경우 향후 채용 예정인 팀원에 대한 현황 간략 기재

### 3. 창업아이템 개요 및 차별성

#### 3-1. 창업 아이템 개요

- 
-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아이디어 및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3-2. 창업아이템 차별성

- 
- 

※ 국내/외 (유사)경쟁기술 또는 (유사)경쟁기술과의 비교를 통한 차별성, 비교우위성 등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 3-3. 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 

※ 기창업자 : 제품 또는 서비스 구현 방법, 현재 구현진척 사항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4.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 4-1.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 
- 

※ 현재 시장의 규모와 전망, 시장 변화의 특징 등 시장 분석 내용을 기재  
※ 시장분석을 통해 발견한 주요 이슈 또는 시사점 등을 기재

### 4-2. 국내외 시장 진입 전략

- 
- 

※ 국내외 시장성에 기반한 시장진입 전략(목표시장, 진입 시기, 방법, 마케팅 등)에 대한 간략 기재

## 5. 창업아이템의 수익성

### 5-1. 사업모델 및 목표수익(수익성 제고 방안)

- 
- 

※ 사업화를 위한 전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수익모델 또는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제시  
※ 목표 수익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재

## 6. 자금조달계획

### 6-1.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

-

※ 그 간의 정책자금, 용자, 투자유치 실적 및 상세내용을 표 등을 활용하여 기재  
※ 향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정책자금, 용자, 투자유치 등) 기재

## 7. 기타사항(지원기관 기대사항, 추가 강조사항 등 자유기재)

○

-

※ 지원기관(AC)에 대한 기대사항 및 강조사항, 협력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기재

## 별첨 3 2025 B-Wave TIPS 제출 서류 안내

※ '필수서류'와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시 제출

구 분	목 록	비고
필수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및 참가신청서 각 1부</li> <li>•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li> <li>•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li> <li>* 학생증 불가</li> </ul>	신청시 제출
필수서류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li> <li>-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및 홈텍스(온라인)에서 사실증명 발급 (총 사업자등록내역)</li> </ul> </li> <li>• 중소기업확인서</li> </ul>	
기타 서류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투자계약서, 수상경력 등</li> </ul>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해당시)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등록)증 등

※ 부족 시 복사하여 사용

기타 증빙

투자계약서, 수상(상장) 증빙 등

※ '기타증빙' 명칭을 수정하여 해당되는 증빙명칭으로 수정하여 사용가능하며 부족 시 복사하여 사용

## 별첨 4 신청자격 관련 사항(확인)

###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0.8.)
<p><b>제2조(창업의 범위)</b>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li> <li>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li> </ol>	<p><b>제2조(창업의 범위)</b>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li> <li>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li> <li>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li> <li>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li> </ol>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붙임 2****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